

● 제33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516)

2025. 4. 2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16

I. 조례안 개요

1. 발의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환 의원 (찬성 15명)

나. 발의일자 : 2025년 3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02일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 취사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일부 영업장소를 제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중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함(안 제2조제1항제7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 ('25. 4. 5. ~ '25. 4. 9.)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현행	개정안
1. ~ 6. (생략)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1.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2) 검토의견

- 주차장법 제2조 및 국회 검토보고서¹⁾에 따르면, 주차장은 크게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으로 분류되며, 다시 세분류로 ① ‘노상주차장’은 ‘공영 노상주차장’, ② ‘노외주차장’은 ‘공영 노외주차장’ 및 ‘민영 노외주차장’, ③ ‘부설주차장’은 ‘공영 부설주차장’ 및 ‘민영 부설주차장’으로 나뉜다.

< 주차장 종류 및 설치 주체 >

구분	내용	설치주체	비고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영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영
		민간	민영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영
		민간	민영
* 음영은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주차장 ※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1378호) 관련 국회검토보고서 p. 10 인용

- 현행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제2호」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목적 외 이용 금지) 해석상, 민영 · 공영 노외주차장 모두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것은 ‘주차장 목적 외 사용’ 즉, 주차장법 제2조제6호상의 ‘주차’ 목적이 아닌 ‘음식 판매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²⁾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제2호
<p>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p>
<p>주차장법 제2조제6호 주차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p>
<p>도로교통법 제2조</p> <p>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p>

- 아울러, 2024년 9월 20일자로 시행된 주차장법 제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주차장법
<p>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p>

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1378호) 관련 국회검토보고서 p.7 인용

- 즉, ‘**공영** 노외주차장’에서의 ‘취사금지 등’의 경우는 주차장법 제6조의3 신설에 따라,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제2호」 (노외주차장 주차장 목적 외 이용 금지) 해석조치 필요 없게 구체화 되었음.
 - 동 주차장법 제6조의3에 따른 ‘누구든지’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포섭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동 조례 제2조제1항제7호의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이 포섭됨.
 - 그리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음식 판매’를 위해 ‘음식을 가공 조리하는 행위 및 이를 위해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역시 동법상의 ‘취사 행위’와 ‘불을 피우는 행위’에 포섭될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공영** 노외주차장’에서는 주차장법 제15조제2항 해석상 푸드트럭 운영이 금지되고, 나아가 신설된 주차장법 제6조의3에 따라 명시적 금지됨.

노외주차장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 가능 여부			
		주차장법 제15조제2항	주차장법 제6조의3
노외주차장	민영 노외 주차장	해석상 금지 (주차 외 목적 금지)	-
	공영 노외 주차장	해석상 금지 (주차 외 목적 금지)	명시적 금지 (취사 금지)

- 이에 더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지 제37호 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유의사항 3.에 따르면, ‘식품 관련 영업 신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포함)를 하는 경우 ‘식품 위생법령’ 준수 뿐만 아니라 관련 다른 법령(주차장법 포함) 위반 또는 저촉 여부를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이하 “중략”)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그리고 감사원의 관련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유의사항 3.에 따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신고 수리’ 시에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저촉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권한 없는 「수도법」법령해석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조리동반한 푸드트럭 영업신고 부당 수리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20241022) (P.5 발췌)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지 제37호 서식] “식품 영업신고서” 유의사항 3.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푸드트럭 영업행위를 하려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규율하고있는 「수도법」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청주시(상당구 환경위생과)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청남대에서의 푸드트럭 영업행위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영업행위가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수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수도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한 야외 취사행위에 해당되는 푸드트럭 영업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허용”하는 동 조례 제2조제1항제7호를 관련 법률인 주차장법에 저촉되지 않게 삭제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장소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을 제외하는 개정(안) 본칙 규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공포 후 즉시 시행” 하고자 하는 ‘부칙 규정’ 관련

1) 개정(안)의 내용

- 동 개정(안)의 ‘부칙’은 ‘공영 노외주차장’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장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개정(안) 본칙 규정의 효력을 ‘조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검토의견

- 법제처의 2022년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기존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에서 ‘신법’으로의 ‘법질서 전환’을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이에 더해, 기존 ‘법질서’를 전환하는 ‘신법’의 ‘내용’이 기존의 ‘구법 질서’에서 ‘기득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자에 대해, 장래 그 ‘기득권 또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구법 질서’를 ‘신뢰한 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신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큼.

2022년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313, 316)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자치법규를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

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1)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2)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과도적 조치를 법령에서는 “경과조치”라고 부르고, 경과조치를 담은 규정을 “경과규정”이라고 부른다.

[기득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 (p.316)

이미 어떤 권리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하여 일단 그 권리나 지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법질서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는 경과조치이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구 자치법규에 대한 개인의 신뢰이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 다만, 동 개정(안)의 ‘본칙’ 규정인 (안)제2조제1항제7호의 경우는 ‘조례 개정’ 그 자체를 통해 ‘공영-노외주차장’에서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배제’라는 ‘침익적 입법 효과’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동 일반론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됨.
- 즉, ‘노외-공영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효과’는 이미 상위법률인 「주차장법」 제6조의3의 시행일인 2024년 9월 20일에 기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 다시 말해, 현행 조례 개정(안)은 ‘공영-노외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금지’라는 ‘새로운 법적 효과’를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롭게 창설한 것이 아니며, 2024년 9월 20일을 기점으로 이미 주차장법 제6조의3 시행에 따라 기 발생한 동 상위법의 ‘법적 효과’를 뒤늦게나마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조례’의 입법체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 사료됨.

- 아울러, 아래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를 따를 때,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6조의3(24.3.19. 개정)에서 이미 동 법률 ‘부칙 규정’을 통해 ‘6개월의 경과 규정’을 둔 후, 최종적으로 2024년 9월 20일 에 ‘공영주차장 내 취사등 금지’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이상,

2022년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308)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적용 관계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없고, 상위법령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과 다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없다.

- 동 조례 개정(안)에 ‘상위법률’의 시행일인 24년 9월 20일 과 다른, 새로운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의 시행일 규정(’24. 9. 20.)’에 반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행 개정(안)과 같이 부칙에 ‘공포 후 즉시 시행’을 규정하여도, 기존 ‘기득권자’ 등이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불측의 피해’를 입거나 ‘혼란’을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이미 동 사안 관련 ‘기득권’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6조의3의 부칙인 ‘6개월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 고려되었기 때문임.
- ※ 2024. 10. 30.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자치구에 ‘공문(식품정책과-29759)’을 시달하여 ‘주차장법 제6조의3 시행’으로 인해 ‘노외 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불가함을 기 안내 하였음. 그리고 유선을 통해 확인한 결과, 25년 4월 현재, ‘서울시 공영 - 노외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다.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제5호 (부설주차장 관련) (추가검토의견)

- 「주차장법제19조의4」 제1항 ‘본문’ 해석상, ‘민영’ 및 ‘공영’ ‘부설주차장’ 모두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것은 ‘주차장 목적 외 사용’ 즉, ‘주차 목적’이 아닌 ‘음식 판매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주차장법」 제6조의3에 따라, ‘공영부설주차장’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취사행위’가 금지됨. 즉, ‘공영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본문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목적 외 이용 금지) 해석조차 필요 없음.
- ▶ 다만, 「주차장법제19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 외의 공간’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차장 자체’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전제 하는 주차장법 제6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토부 유권해석[붙임] 존재’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론적으로, ‘민영’ 및 ‘공영’ ‘부설주차장’ 모두 원칙적으로 ‘음식 판매자동차’ 운영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4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붙임- 국토부 유권해석 참조)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 외 공간’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당해 공간’은 ‘주차장 외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법 제6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토부 해석 존재

부설주차장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 가능 여부			
		주차장법 제19조의4	주차장법 제6조의3
부설주차장	민영 부설 주차장	해석상 금지 (주차 외 목적 금지)	-
	공영 부설 주차장	해석상 금지 (주차 외 목적 금지)	명시적 금지 (취사 금지)
단, 주차장법 제19조의4 단서 (용도변경) 규정상 ‘용도변경’시 예외적 인정			

- 따라서, 동 개정(안)과 별개로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상의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이 가능’한 ‘부설주차장’의 범위를 조례상 명확화 하기 위해, 향후 ‘개선 입법’을 검토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수정전]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
[수정후]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종합의견

- 동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6조의3 신설로 인해 ‘공영주차장’ 내에서 ‘취사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설치한 ‘노외 - 공영주차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24년 3월 19일 「주차장법」 제6조의3이 개정되었고, ‘6개월의 경과 규정’을 둔 동 법률 부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2024년 9월 20일에 ‘공영주차장 내 취사 등 금지’라는 동 법률의 효과가 이미 발생중에 있음.
- 따라서, 동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서 ‘노외 - 공영 주차장’을 삭제하는 것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현행 개정(안)의 부칙과 같이 ‘공포 후 즉시 시행’을 규정하여도, 기존 ‘기득권자’ 등이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불측의 피해’를 입거나 ‘혼란’을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이미 동 사안 관련 ‘기득권’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6조의3의 부칙인 ‘6개월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 고려되었기 때문임.
- 이에 더해, 현행 조례 개정(안)은 ‘공영-노외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금지’라는 ‘새로운 법적 효과’를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롭게 창설한 것이 아니며, 2024년 9월 20일을 기점으로 이미 주차장법 제6조의3 시행에 따라 기 발생한 동 상위법의 ‘법적 효과’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임.

※ (참고) 2024. 10. 30.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자치구에 ‘공문(식품정책과-29759)’을 시달하여 ‘주차장법 제6조의3 시행’으로 인해 ‘노외 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불가함을 기 안내 하였음. 그리고 유선을 통해 확인한 결과, 25년 4월 현재, ‘서울시 공영 - 노외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집행기관 의견: **원안가결**

○ 조례 쟁점사항 없음

- 주차장법 제6조의 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

◆ 「주차장법」 개정내용 [본조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4. 9. 20.]

제6조의 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장법 법령해석 회신]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6071(2024.10.29.)

주차장법 제6조의3에 따라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제한됨

문 의 처

(02-2180-8145)

[붙임] 주차장법 법령해석 회신 (국토부 - 생활교통복지과6071, 2024. 10. 29.)

1.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24965(2024. 9. 9.)호 관련입니다.↵

↵

2. 질의요지 ↵

↵

- 부설주차장과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 금지되는지 여부↵

↵

3. 회신내용 ↵

↵

-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령에서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히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은 제한됩니다.↵

↵

-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영 부설주차장에 같은 법 제6조의3이 적용되나,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인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 즉,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노외주차장에서는 불가하나, 부설주차장에서는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